강원도립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규정

〔제정 2020-11- 9. 규정 제558호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원격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교직원 원격교육 역량 제고 지원
2. 원격수업 우수사례 공유 확산
3. 원격교육 시스템 관리
4. 기타 센터의 목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. 센터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에 원격지원 운영팀을 둔다. 이 운영팀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위원,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원격교육지원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기본 계획의 수립
2. 센터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사항
3. 원격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역량 인증제 및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한 사항

③ 위원장은 필요시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자체평가) 원격교육의 지속적 품질 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.

부칙(제 558호, 2020. 11 . 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